평생학습관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한수정안

서울특별시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평생학습관의 지정 등) ①교육감은 평생학습관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 등을 평생학습관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평생학습관은 공공도서관, 문화원, 종합사회복지관, 청소년수련관, 여성인력개발센터 등의 공공시설 중 지역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지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생학습관의 명칭은 "서울특별시교육감 지정 평생학습관"이라 한다.

④평생학습관의 지정기간은 지정일로부터 3년으로 하되, 당해 기관으로부터 연장 승인을 요청할 경우에는 운영실적을 고려하여 재지정할 수 있다.

안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제5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위원은 당해 평생학습관의 장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3인 이하로 구성한다.

②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당해 평생학습관의 장이 위촉하는 자로 하되, 제1호 내지 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전체 위원의 과반수로 한다.

1. 평생교육 분야의 학계인사
2. 평생교육관련 단체 및 기관의 평생교육 관계자
3. 지역주민
4. 기타 당해 평생학습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제2항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안 제10조중 단서를 삭제한다.

(다음 페이지에 계속)

신·구 조문 대비표

제정안	수정안
제3조 (평생학습관의 지정 등) ①교육감은 평생학습관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 및 단체(이하 "평생교육시설"이라 한다)를 평생학습관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3조 (평생학습관의 지정 등) ①교육감은 평생학급관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 등을 평생학습관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평생학습관의 지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②평생학습관은 공공도서관, 문화원, 종합사회복지관, 청소년수련관, 여성인력개발센터 등의 공공시설 중 지역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지정한다.
<신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생학습관의 명칭은 "서울특별시교육감 지정 평생학습관"이라 한다.
<신설>	④평생학습관의 지정기간은 지정일로부터 3년으로 하되, 당해 기관으로부터 연장 승인을 요청할 경우에는 운영실적을 고려하여 재지정할 수 있다.
제6조 (위원회의 구성) ①제5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위원은 7인 이상 15인 이하로 구성하며, 평생학습관의 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제6조 (위원회의 구성) ①제5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위원은 당해 평생학습관의 장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3인 이하로 구성한다.
②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②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당해 평생학습관의 장이 위촉하는 자로 하되, 제1호 내지 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전체 위원의 과반수 로 한다. 1. 평생교육 분야의 학계인사 2. 평생교육관련 단체 및 기관의 평생교육 관계자 3. 지역주민 4. 기타 당해 평생학습관의 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위원은 평생교육계 전문인사, 자치단체 의원 및 관계자, 지역주민,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중에서 당해 평생학습관의 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③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제2항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정안	수정안
제10조 (수당과 여비) 위원회의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공무원은 제외한다.	제10조 (수당과 여비) 위원회의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삭제)

서울특별시평생학습관운영에관한조례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 제13조제4항에 의하여 평생학습관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평생학습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평생교육에 대한 연구
2.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연수
3. 평생교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제공 및 평생학습의 상담
4.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운영
5. 기타 평생학습에 관한 사항

제3조 (평생학습관의 지정 등) ①교육감은 평생학습관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 등을 평생학습관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평생학습관은 공공도서관, 문화원, 종합사회복지관, 청소년수련관, 여성인력개발센터 등의 공공시설 중 지역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지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생학습관의 명칭은 "서울특별시교육감 지정 평생학습관"이라 한다.

④평생학습관의 지정기간은 지정일로부터 3년으로 하되, 당해 기관으로부터 연장 승인을 요청할 경우에는 운영실적을 고려하여 재지정할 수 있다.

제4조 (지원 및 지도) ①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평생학습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②교육감은 평생학습관으로 지정된 평생교육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지도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평생학습관의 역할을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5조 (평생학습관운영위원회) 평생학습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발전을 위하여 당해 평생학습관에 평생학습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 (위원회의 구성) ①제5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위원은 당해 평생학습관의 장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3인 이하로 구성한다.

②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당해 평생학습관의 장이 위촉하는 자로 하되, 제1호 내지 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전체 위원의 과반수로 한다.

1. 평생교육 분야의 학계인사
2. 평생교육관련 단체 및 기관의 평생교육 관계자
3. 지역주민
4. 기타 당해 평생학습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제2항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

간으로 한다.

제7조 (위원회의 직무)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평생학습관 운영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평생학습관 발전에 관한 사항
3.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사항
4. 평생학습 프로그램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평생학습자료의 구성 방침에 관한 사항
6. 다른 평생교육시설 및 단체와의 업무 협력에 관한 사항
7. 기타 평생학습관 운영 및 후원에 관한 사항

제8조 (위원회의 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간사 및 서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 간사는 평생학습관의 장이 지정하는 자가 되며, 서기는 관련업무 담당직원이 된다.

제10조 (수당과 여비) 위원회의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교육규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평생학습관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 페이지에 계속)